

예산회계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은 건설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능력 향상과 입찰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정부계약제도 중 입찰시 입찰금액 외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총액단가입찰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비 고
<p>제86조(공업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불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다음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일 이상 2.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3. 공사예정금액이 <u>10억원이상인 경우 20일이상</u> 3.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이상 4.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상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p>	<p>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용찰준비기간(현장설명을 실시하는 날부터 입찰일까지의 기간)을 종전의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함.</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열람하게 하는 외에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비 고
<p>④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외의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게 되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입찰시에 산출내역서에 총액으로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외의 공사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의 제출시까지 그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⑥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p> <p>⑦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산출내역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외의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되,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따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공사와 제4항전단에 규정된 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⑦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과 입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입찰시 입찰금액외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총액단입찰제의 대상을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만으로 하였으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추가로 포함시킴.
<p>제89조(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 ①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불일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p>	<p>제89조(분리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규격과 가격을,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불일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p> <p>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입찰에 불일 수 있는 대상입찰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기술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가격입찰만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술입찰과 가격입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입찰의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기술용역 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p>제10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70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u>직전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u> 나. 작업상의 혼란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 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u>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u> 	<p>가. 제70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외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u>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비 고
<p>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u>직전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u></p> <p>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p> <p>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p> <p>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p>	<p>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u>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u></p> <p>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p>	
<p>제119조(입찰보증금)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②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 	<p>1.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p> <p>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p>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급보증서의 범위에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포함시킴.
<p>제121조(계약보증금)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비 고
<p>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3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6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p>	<p>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의 공사·제조등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3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6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p>	
<p>제122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1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u>2차공사이후의 계약</u>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1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u>2차공사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u>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2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